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파리 협정문 국문번역본

THE PARIS AGREEMENT

UN FRAMEWORK COVENTION 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21

PARIS, 11.30-12. 2015

2016.1



수원의제21실천협의회



본 문건은 시민사회의 정보교류 목적으로 작성된 민간단체의 번역문으로,
정부의 공식 번역문건이 아님을 밝히며,
본 번역내용 인용 시 출처를 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파리 협정문

2016 © 수원의제21실천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발행기관 | 수원의제21실천협의회

번역기관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번역 | 신주운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객원연구원/전 환경운동연합 기후팀 활동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21차 회기

당사국, 2015년 11월 30일 ~ 12월 11일

의제 항목 4(b)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Decision 1/CP.17)

협약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또 다른 법적 장치 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합의된 결과인 의정서 채택

파리 협정 채택

의장 제안서

초안 결정문 -/CP.21

당사국총회는,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에 관한 특별작업반 설립에 대한 결정문 1/CP.17을 상기하고,

협약의 제2조, 3조, 4조 또한 상기하고,

결정문 1/CP.16, 2/CP.18, 1/CP.19와 1/CP.20을 포함한 당사국총회와 관련된 결정을 상기하고,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 A/RES/70/1 채택과 “우리의 세상을 전환하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서 특히 13번째 목표와 제3차 개발 재정에 관한 국제 총회의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채택과 재난 위기 감축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채택을 환영하고,

기후변화가 인류사회와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시급한 위협이 됨에 따라 모든 국가의 폭넓은 협력과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국제적인 대응에 참여해 줄 것을 인지하고,

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 배출의 상당한 감축을 인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시급함이 요구됨을 강조하며,

기후변화가 인류 공통의 우려임을 인지하면서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행동을 취할 때 성평등, 여성의 권한 이양과 세대를 통합한 평등뿐만 아니라 인권, 건강권, 토착민·지역사회·이민자·아동·장애인 및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권리, 개발 권리에 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증진·고려해야 하고,

또한 결정문 5CP.7, 1/CP.10, 1/CP.16, 8/CP.17와 관련하여 대응 조치 이행의 영향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특정한 요구와 우려를 인지하고,

2020년까지 연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당사국들의 감축 공약의 총 영향과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평균 온도 상승의 억제와 양립하는 총 배출경로 사이의 심각한 차이를 제거할 긴급한 필요성을 깊은 우려와 함께 강조하면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온도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할 것을 추구하고,

또한 강화된 2020년 이전 목표는 강화된 2020년 이후 목표의 견고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2020년 이후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와 협약 이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선진국인 당사국은 개도국인 당사국이 2020년 이전 목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재정·기술·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에 감축과 적응 노력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을 포함하여 야심찬 초기 행동의 지속적인 편익을 강조하고,

강화된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개도국들, 특히 아프리카에서 보편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을 증진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사회·민간부문·금융기관·도시·지방정부·지역사회 및 토착민을 포함하여 당사국들과 협약의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들이 더 강하고 야심찬 기후행동을 동원하기 위하여 지역적이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유지할 것에 동의한다.

I. 채택

1. 부속서에 명시된 대로 기후변화협약(UNFCCC) 하의 파리 협정(여기서부터 “협정”으로 명시함)을 채택할 것을 결의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정의 수탁자로 2016년 4월 22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 미합중국 뉴욕에서 서명을 위해 협정을 개방할 것을 요청한다.

3. 2016년 4월 22일에 합의를 위한 고위급 서명식을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
4. 모든 당사국은 사무총장이 소집한 서명식에서 혹은 가급적 빨리 협정에 서명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에 적절한 경우에는 각국이 비준, 수용, 승인 혹은 가입을 기탁할 것을 요청한다.
5. 협약 당사국은 협정의 모든 규정을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준용할 것을 인지하고, 당사국은 가신청 통지를 기탁자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6. 결정문 1/CP.17에 따라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에 관한 특별작업반의 작업이 종료되었음을 주목한다.
7.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에 관한 특별작업반 의장단의 임원 선출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동일한 준비 하에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¹⁾
8. 또한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준비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제1차 회기 소집을 준비할 것을 결정한다.
9. 나아가 본 결정에 명시된 관련된 요청에서 나온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할 것을 결정한다.
10.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작업 경과를 당사국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제1차 회기까지 그 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
11.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2016년에 열리는 회기를 협약 보조기관의 회기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제1차 회기에서 논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를 통해 권고된 결정문 초안을 준비하기로 결정한다.

II. 국가별 기여방안(INDC)

12. 결정문 1/CP. 2(b)항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환영한다.
13. 국가별 기여방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그리고 당사국총회의 제22차 회기(2016년 11월)에 앞서 명확성, 투명성, 국가별 기여방안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제2항에 명시된 바, 당사국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사무국과 소통할 것을 재강조한다.

1) 결정문 2/CP.18, 2항에 의해 승인됨

14. 사무국은 기후변화협약 웹사이트에 당사국이 통보한 국가별 기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공표할 것을 요청한다.
15.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당사국에 국가별 기여방안의 준비 및 통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진국인 당사국, 재정 매커니즘의 운영기관 및 그러한 위치에 있는 기타 기관에 그 요청을 재강조한다.
16. 문서 FCCC/CP/2015/7에 명시된 대로 2015년 10월 1일까지 당사국들이 통보한 국가별 기여방안의 총 영향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주목한다.
17. 국가별 기여방안의 결과로 2025년에서 2030년까지의 예측되는 총 온실가스 배출수준은 최소 2°C 시나리오 이하의 범위에 들지 않고 오히려 2030년에 55 기가 톤의 배출량이 예상됨을 주목한다. 40 기가 톤에 달하는 감축을 통해 전 세계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이하로 유지하거나 아래 21항에 언급된 대로 특별보고서에서 확인된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상회하는 정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별 기여방안에 따른 것보다 더 많은 감축 노력이 요구됨을 주목한다.
18.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 개도국인 당사국들의 국가별 기여방안 내에 적응에 대한 요구가 담겨져야 한다.
19. 사무국은 2016년 4월 4일까지 결정문 1/CP.20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한 국가별 기여방안의 모든 정보를 담도록 상기 16항에 언급된 종합 보고서를 갱신하여 2016년 5월 2일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20. 2018년에 당사국 간의 촉진적인 대화를 열어 협약 제4조 1항에 언급된 장기 목표를 위한 과정과 관련하여 당사국 공동의 노력을 살피고, 협정 제4조 8항에 따라 국가별 기여방안의 준비를 고지할 것을 결정한다.
2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8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C 상승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및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III. 협정 이행에 관한 결정

감축

22. 당사국은 각 국이 파리 협정에 대한 비준, 수용 또는 승인 문서를 제출하는 시기보다 늦지 않도록 제1차 국가 기여방안을 전달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당사국이 국가별 기여방안을 협정 가입 이전에 통보했다면 해당 당사국은 그와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본 규정에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23. 결정문 1/CP.20와 관련하여 국가별 기여방안에 2025년까지의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담은 당사국은 협정 제4조 9항에 따라 2020년까지 새로운 국가별 기여방안을 그 이후부터 5년마다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

24. 결정문 1/CP.20와 관련하여 국가별 기여방안에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담은 당사국은 협정 제4조 9항에 따라 2020년까지 기여방안을 그 이후부터 5년마다 통보하거나 갱신할 것을 요청한다.

25. 당사국은 사무국이 준비한 종합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의 기여방안의 명확성, 투명성,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와 관련된 회의가 시작되기 최소 9개월에서 12개월 앞서 협정 제4항에 명시된 국가별 기여방안을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결정한다.

26.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국가별 기여방안에 대한 지침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27. 국가별 기여방안을 통보한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명확성, 투명성,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기준년도를 포함한) 기준에 대한 정량적 정보, 시간계획 및/또는 이행 기간, 적용 범위, 계획 과정,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측정을 포함한 추산 및 방법론적 접근, 제거, 국가 상황에 따라 당사국의 기여방안이 지니는 공정하고 야심찬 정도, 제2조에 명시된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여 방법을 포함할 것을 동의한다.

28.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국가별 기여방안에 대한 명확성, 투명성, 이해를 도모하고자 당사국이 제출하는 정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29. 또한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본 협정 제4조 제12항에 명시된 공공레지스트리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방식 및 절차를 발전시킬 것을 요청한다.

30. 더 나아가 사무국은 당사국 총회 첫 회기에서 상기 제29항에 명시된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채택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 감축목표를 기록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안으로 임시 공공레지스트리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

31.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협약 하에 세워진 접근방식 및 적절한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제도를 통해 당사국의 국가별 기여방안을 설명하는 지침을 상세히 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평가하고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방법론과 일반 통계에 따라 인위적 배출과 제거를 설명한다.

나. 당사국은 기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국가별 기여방안의 통보 및 이행 간의 방법론적 일관성을 확실히 한다.

다. 당사국은 국가별 기여방안에 모든 범주의 인위적 배출 또는 제거를 포함하고, 한 번 배출원, 흡수원 또는 활동이 포함될 경우 이를 계속 포함하도록 한다.

라. 당사국은 어느 범주의 인위적 배출 또는 제거가 배제되었는지 설명한다.

32. 당사국은 상기 제31항에 명시된 지침을 제2차 및 이후의 국가별 기여방안에 준용할 것을 결정하고, 당사국은 그 지침을 제1차 국가별 기여방안에 준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33. 또한 보조기관 하에서 대응수단 이행효과 포럼은 계속되고, 협정을 수행할 것을 결정한다.

34.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 및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대응수단 이행효과 포럼의 방식, 작업 프로그램, 기능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고, 협정에 따른 감축 행동의 영향을 이해하고 그런 영향에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당사국 간의 정보, 경험, 모범적 관행을 교류하는데 협력을 강화하여 협정의 대응수단 이행의 효과를 알린다. 2)

36. 당사국은 협정 제4조 19항에 따라 2020년까지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低)배출 개발 전략을 통보할 것을 요청하고, 사무국은 당사국이 통보한 온실가스 저(低)배출 전략을 UNFCCC 웹사이트에 공표할 것을 요청한다.

37.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은 협정 제6조 2항에 명시된 지침을 개발하고 권고하여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채택할 것을 요청하며, 협정에 따라 국가별 기여방안에 담겨진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 모두에 대한 대응 조정을 기반으로 이중계상이 방지된 지침을 포함한다.

38.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본 협정 제6조 4항에 따라 설치된 매커니즘의 규칙, 방식, 절차를 채택하며 다음을 기반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가. 각 당사국의 권한을 받은 자발적 참여

나. 기후변화의 감축과 관련한 실제적이고 측정가능한 장기적 편익

다. 구체적인 활동 범위

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

마. 지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감축 활동으로 인한 배출 감축의 검증 및 증명

바. 협약 및 관련된 법적 제도 하에서 채택된 기존 매커니즘과 접근 방식을 통해 습득된 경험과 교훈

2) 제35항이 삭제되었으며 이어지는 조항 번호 및 문서 내의 다른 조항에 대한 상호 참조(cross references)는 향후 단계에서 수정될 것이다.

39.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상기 38항에 명시된 매커니즘에 대한 규칙, 방식, 절차를 발전시키고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40. 또한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은 감축, 적응, 재정, 기술이전과 역량강화 간의 관련성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과 비(非)시장 접근법의 이행 및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그 목적에 따라 협정 제6조 8항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非)시장 접근 틀 하에서 작업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41. 더 나아가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상기 40항에 명시된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적응

42. 적응위원회 및 최빈개발도상국 전문가그룹은 공동으로 협약 제7조 3항에 명시된 개도국의 적응 노력을 인정할 방식을 개발하고,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43. 또한 적응위원회는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한 권고안을 준비할 목적으로 그 의무와 제2차 3개년 작업계획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가. 당사국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2017년에 협약의 적응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검토

나. 개도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적응 요구의 평가 방법론을 심의

44. 모든 관련된 국제연합 기관과 국제·지역·국내 금융기관들은 사무국을 통해 개발지원과 기후재정 프로그램에 기후 내성과 기후 탄력성을 높이는 수단을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정보를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45. 당사국은 적응에 대한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결정문 1CP.16, 제13항을 고려하여 특히 개도국에 적절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센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46. 또한 적응위원회 및 최빈개발도상국 전문가그룹은 금융에 대한 상설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방법론을 개발하고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다음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가. 본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개도국의 적응을 위한 지원 조성을 촉진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본 협정 제7조 14항(다)에 명시된 적응의 적절성 및 효과성과 지원을 검토할 것

47. 더 나아가 녹색기후기금은 결정문 1/CP.16과 5/CP.17과 일관된 국내 적응계획의 수립과 정책·사업·프로그램의 차후 이행을 위하여 최빈개발도상국과 개도국인 당사국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손실과 피해

48. 2016년에 검토 후,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매커니즘의 지속을 결정한다.

49. 바르샤바 국제 매커니즘 집행위원회는 종합적인 위기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당사국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과 위기전가에 관한 정보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위기전가 정보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50. 또한 바르샤바 국제 매커니즘 집행위원회는 그 절차와 권한에 따라 전담반을 설치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이주를 막고 최소화하며 대응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협약 외의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기관뿐만 아니라 적절하다면 적응위원회 및 최빈개발도상국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협약 내의 기존 기관 및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거나 그 업무를 보완하고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51. 더 나아가 바르샤바 국제 매커니즘 집행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상기 49항과 50항에 명시된 규정을 실행하고 연간보고서에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52. 협정 제8조는 그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근거를 수반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을 동의한다.

재정

53. 협정 이행에 있어서 개도국에 제공된 재원은 제2조에 정의된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개도국의 정책, 전략, 규제, 행동계획 및 감축과 적응 두 측면에 대한 기후변화 행동의 이행을 강화해야 함을 결정한다.

54. 또한 협정 제9조 3항에 따라 선진국은 의미 있는 감축 행동과 이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2025년까지 기존의 공동 동원 목표를 지속할 것이며,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2025년 전까지 개도국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매년 조성될 1,000억 달러(USD)에서 새로운 공동의 정량 목표를 세울 것을 결정한다.

55.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공동의 감축 및 적응 접근방식과 같은 대안적 정책 접근뿐만 아니라 결과를 기반으로 한 보상, 적절한 경우 산림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 접근 및 긍정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이행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예측가능한 재원의 중요성과 보전의 역할,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의 탄소저장 강화를 인지하고, 그러한 접근과 관련하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편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공공 및 민간, 양자간 및 녹색기후기금과 같은 다자간 재원을 통한 지원 조정과 당사국총회에 의한 관련 결정사항에 따른 대안적 재원을 장려한다.

56. 파리 총회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협정 제9조 5항에 따라 당사국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제22차 회기에서 개시할 것을 결정한다.

57. 또한 협정 제9조 7항에 따라 정보와 관련된 규정들이 아래 96항에 명시된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행될 것을 보장하기로 결정한다.

58.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당사국총회 제24차 회기(2018년 11월)에서 심의할 협정 제9조 7항에 따른 공공 개입을 통해 제공되고 동원되는 재원의 회계 방식을 발전시킬 것을 요청한다.

59. 녹색기후기금과 지구환경기금, 협약의 재정 매커니즘 운영의 위임을 받은 기관들, 지구환경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최빈개발도상국기금과 특별기후변화기금은 본 협정을 수행한다.

60. 적응 기금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와 교토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 의한 관련 결정에 따라서 협정이 수행됨을 인지한다.

61. 교토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상기 60항에 명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62.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그것이 전달하게 될 협정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적격 기준에 대해서 협약의 재정 매커니즘 운영을 위임받은 기관에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3. 협정 채택 이전에 동의된 결정을 포함하여 당사국총회가 내린 관련 결정에서 협약의 재정 매커니즘 운영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한 지침이 준용됨을 결정한다.

64. 또한 재정에 대한 상설위원회는 당사국총회 하에 수립된 기능과 책임에 따라 협정을 수행할 것을 결정한다.

65. 협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해, 그리고 적절하다면 최빈개발 도상국과 군서도서국을 포함하여 개도국인 당사국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지원을 통해 국가 주도의 전략을 지원하는 재원의 조정 및 전달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기술개발 및 이전

66. 문서 FCCC/SB/2015/INF.3에 명시된 바, 기술수요평가 결과의 이행 강화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기술 집행위원회의 임시 보고서에 주목한다.

67. 기술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협정 이행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술집행위원회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가 다음과 관련된 업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한다.

가. 기술 조사, 개발 및 입증

나. 내생적 역량과 기술의 개발 및 증진

68.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은 제44차 회기(2016년 5월)에서 협정 제10조 4항에 설치된 기술 체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당사국총회는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그 체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목적으로 결과보고를 요청하며 그 체제는 다음을 촉진해야 한다.

가. 신뢰성 있는 프로젝트 준비를 통한 기술수요평가의 내용 및 갱신과 그 결과 중에서 특히 기술행동 계획 및 프로젝트 구상에 대한 이행의 강화

나. 기술수요평가 결과의 이행을 위한 강화된 재정 및 기술지원 규정

다. 이전될 준비가 된 기술 평가

라. 사회적·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막는 장벽을 해결하고 그러한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69. 기술집행위원회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는 보조기관을 통해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서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활동 보고를 결정한다.

70. 또한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하여 협정의 이행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술 매커니즘에 제공되는 지원의 효과 및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결정한다.

71. 이행보조기관은 44차 회기에서 상기 70항에 명시된 주기적 평가의 범위와 방식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청하고, 결정문 2/CP.17, 부속서 7, 20항에 명시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의 검토와 당사국총회 제25차 회기(2019년 11월)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협정 제14조에 명시된 세계 상황점검의 방식을 고려한다.

역량강화

72. 협약의 역량강화 활동의 일관성 및 조정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역량강화 이행과 더 나아가 역량강화 노력증진에 있어서 현재 및 미래의 격차와 요구를 제기할 목적으로 역량강화에 대한 파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한다.
73. 또한 역량강화에 대한 파리위원회는 아래 74항에 언급된 업무 계획을 관리하고 감독할 것을 결정한다.
74. 더 나아가 다음의 활동과 함께 2016-2020년 간 업무 계획을 착수할 것을 결정한다.
- 가. 협약 내·외의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역량강화 활동을 이행하는 협약의 기존 기관들 간에 중복을 피하는 방법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증대하는 방법을 평가할 것
 - 나. 역량의 격차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대응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
 - 다. 역량강화 이행을 위한 도구와 방법론의 개발 및 보급을 증진할 것
 - 라. 국제·지역·국내·지방정부의 협력을 조성할 것
 - 마. 협약 하에 설치된 기관에 의한 역량강화 작업을 통해 학습된 모범적 관행, 문제점, 경험, 교훈을 확인하고 수집할 것
 - 바.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이 시공간에 따라 역량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주인의식을 갖는 방법 논의할 것
 - 사. 국내·지역·지방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확인할 것
 - 아. 협약 하에 설치된 기관의 역량강화 활동 및 전략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협약 하에서 관련된 진행 과정과 이니셔티브 간의 담화, 조정, 협력, 일관성을 촉진할 것
 - 차.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역량강화의 유지 및 더 나아가 개발에 관한 지침을 사무국에 제공할 것
75. 역량강화에 대한 파리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효과적인 역량 구축에 있어서 성공과 문제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할 목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와 관련된 분야 혹은 주제에 매년 집중할 것을 결정한다.
76. 이행보조기관은 매년 회기 중에 역량강화에 대한 파리위원회 회의를 조직할 것을 요청한다.
77. 또한 이행보조기관은 당사국총회 제22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한 본 문제의 결정문 초안을 권고할 목적으로, 상기 75항, 76항, 77항과 아래 82항, 83항을 고려하면서 역량강화체제 이행에 대한 3차 종합 검토의 맥락에서 역량강화에 대한 파리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78. 당사국은 2016년 3월 9일까지 역량강화에 대한 파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3)

3) 당사국은 다음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다. <<http://www.unfccc.int/5900>>

79. 사무국은 제44차 회기에서 이행보조기관이 심의하도록 상기 78항에 명시된 제출을 기타문서로 편집할 것을 요청한다.

80. 역량강화에 대한 파리위원회에 제공될 자료는 제출, 역량강화체제 이행에 대한 3차 종합 검토, 개도국의 역량강화 체제 이행에 관한 사무국의 연례 종합 보고서, 협약 및 교토의정서 하에 설치된 기관들의 역량강화 작업에 대한 사무국의 모음집 및 종합보고서, 더반 포럼 및 역량강화 사이트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할 것을 결정한다.

81. 역량강화에 대한 파리위원회는 그 업무에 대한 연례 기술발전 보고서를 준비하고, 당사국총회 회기에 맞춰 이행보조기관 회기에서 이용 가능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82. 또한 당사국총회의 제25차 회기(2019년 11월)에서 역량강화에 대한 파리위원회의 진행사항, 확장의 필요성, 효과 및 강화를 검토하고, 본 협정 제11조 5항과 일관된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에 있어서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 권고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83. 협약 제6조와 협정 제12조에 반영된 바, 모든 당사국은 교육, 훈련, 대중인식이 역량강화 기여에 적절히 고려되었음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한다.

84.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협정의 행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 대중인식, 대중참여, 대중의 정보 접근의 이행을 증진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청한다.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

85. 2020년 이전과 이후의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명성을 위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한다. 본 이니셔티브는 협정 제13조에 명시된 바,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강화된 투명성 요구사항에 맞추고자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을 지원할 것이다.

86. 또한 투명성을 위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투명성 관련된 활동을 위한 국내적 제도를 강화할 것
- 나. 협정 제13조에 명시된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된 수단, 훈련, 지원을 제공할 것
- 다. 시간 경과에 따라 투명성 개선에 협조할 것

87. 기존의 지구환경기금 지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구환경기금의 6차 재원보충 및 향후 재원보충 주기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보고와 관련된 요구사항으로서 투명성을 위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준비를 마련할 것을 지구환경기금에 권고하고 요청한다.

88. 재정 매커니즘의 제7차 검토에서 투명성을 위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평가할 것을 결정한다.
89. 재정 매커니즘의 운영기관인 지구환경기금은 당사국에 제출할 연례 보고서에 2016년에 개시될 상기 85항에 명시된 투명성을 위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의 계획, 개발, 이행의 작업과정을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90. 개발도상국은 협정 제13조 2항에 따라 보고의 범위, 빈도, 세부적인 수준 및 검토의 범위를 포함하여 그 조항의 규정을 유연하게 이행하고, 검토의 범위는 제92항에 언급된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 개발에 그러한 유연성이 반영되면서 선택사항인 국내 검토를 준비할 것을 결정한다.
91.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인 당사국 및 군소도서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은 적절하다면 격년 단위로 제13조 7항, 8항, 9항, 10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출하며, 최빈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군소도서국은 자국의 재량에 따라 이 정보를 제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
92.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본 협정 제13조 13항에 따라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을 위한 권고안을 발전시키고,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이를 채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총회 제24차 회기에서 심의하기 위한 첫 번째 또는 차후 검토 및 갱신 년도를 적절한 경우 정기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한다.
93. 또한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상기 92항에 명시된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 가. 시간 경과에 따라 개선된 보고 및 투명성 축진의 중요성
 - 나. 개도국인 당사국의 역량에 비추어 이들에 유연성을 제공할 필요성
 - 다. 투명성·정확성·완결성·일관성·비교가능성을 증진할 필요성
 - 라. 당사국 및 사무국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중복을 방지할 필요성
 - 마. 당사국이 협약 하의 각국의 의무에 따라 적어도 보고의 질과 횡수를 유지할 것을 보장할 필요성
 - 바. 이중계상 방지를 보장할 필요성
 - 사. 환경 보전을 보장할 필요성
94. 더 나아가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상기 92항에 명시된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킬 때, 협약 하에서 진행 중인 관련 과정을 고려하고, 이로부터 얻은 경험을 이용할 것을 요청한다.
95.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상기 92항에 명시된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킬 때, 다음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 가. 개도국의 역량에 기초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의 형태
 - 나. 국가별 기여방안에 제출한 방법론과 각 당사국의 국가별 기여방안 달성을 위한 진행과정을 보고하는데 이용되는 방법론 간의 일관성

- 다. 당사국이 집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된 교훈을 공유할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에 국내 적응 계획을 포함한 적응 행동 및 계획에 관한 정보의 보고
- 라.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이 재정 보고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 심의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지원 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표 형식을 통해 적응과 감축 모두에 제공되는 지원을 강화하며, 그 지원의 이용, 효과, 예측된 결과를 포함하여 개도국에 제공된 지원에 대한 보고를 강화
- 마. 협약 하에서 재정에 대한 상설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의 격년 평가 및 기타 보고서의 정보
- 바. 대응 수단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보

96. 또한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상기 92항에 명시된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킬 때, 협정 제9조에 따라 제공된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97.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상기 92항에 명시된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에 대한 작업 과정을 당사국총회 향후 회기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본 작업은 늦어도 2018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98. 상기 92항에 따라 발전된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은 파리 협정의 발효에 따라 준용됨을 결정한다.

99. 또한 이 투명성 체제의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은 최종 격년 보고서 및 격년 갱신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즉시, 결정문 1/CP.16, 제40항에서 47항, 제60항에서 64항, 그리고 결정문 2/CP.17, 제12항에서 62항에 의해 세워진 측정·보고·검증을 기반으로 하며, 결국 이를 대체하기로 결정한다.

세계 상황점검

100.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 권고할 목적으로 협정 제14조에 명시된 세계 상황점검에 대한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고 당사국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 다음에 관한 정보

(가) 당사국이 발표한 국가별 기여방안의 전반적인 효과

(나) 협정 제7조 10항과 11항에 명시된 통보 및 협정 제13조 7항에 명시된 보고서로부터 적응 노력, 지원, 경험, 우선순위에 대한 상황

(다) 지원에 대한 동원과 규정

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최신 보고서

다. 보조기관의 보고서

101. 또한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평가를 통해 협정 제14조에 따른 협정 이행에 대한 세계 상황점검을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제공하고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 제2차 회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102. 더 나아가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협정 제14조에 명시된 세계 상황점검에 관한 방식을 발전시키고,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권고할 목적으로 당사국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행 및 준수의 촉진

103. 협정 제15조 2항에 명시된 위원회는 관련된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혹은 법적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12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데,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서 선출되고, 공정한 지리적 대표성을 기반으로 국제연합의 5개 지역별 집단에서 2명의 구성원을, 군소도서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에서 각각 1명의 구성원이 포함됨을 결정하며, 성별 균형을 목표를 고려한다.

104. 파리 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그 방식과 절차에 관한 작업을 완료할 목적으로 협정 제15조 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식과 절차를 발전시킬 것을 요청한다.

최종 조항

105. 사무국은 협정 제21조의 목표를 위하여 당사국총회 제21차 회기 보고서에서 그리고 협정 채택 일에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 가능하게 하고, 협약 당사국이 국내 통보,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격년 보고서 또는 격년 갱신 보고서에서 공표한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 및 비율의 최신정보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IV. 2020년까지의 행동 강화

106. 2020년 이전 기간에 가능한 최고의 감축 노력을 보장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아직 그렇지 아니한 교토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은 교토의정서에 대한 도하 개정안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나. 아직 그렇지 아니한 모든 당사국은 칸쿤 합의 하에 감축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다. 결정문 1/CP.19 제3항, 4항에 명시된 바, 결정문 1/CP.13에 따라 동의된 결과를 구성하는 결정문의 완전한 이행을 가속화하고 모든 당사국이 협약 하에서 가능한 최고의 감축 노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20년 이전 노력을 강화하고자 그 결의를 재강조한다.
- 라. 제1차 격년 갱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개도국인 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 마. 모든 당사국은 그들의 감축 약속의 이행 과정을 증명할 목적으로, 칸쿤 합의 하에 세워진 기존의 측정·보고·검증 과정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107. 당사국은 두 번째 공약기간 동안 유효한 탄소배출권을 포함하여 교토의정서 하에 발행된 단위의 이중계상 없이, 당사국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발적 무효를 촉진할 것을 장려한다.

108. 배출권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당사국들은 환경보전을 증진하고 이중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토의정서 하에서 발행된 배출량 단위와 국제적 약속에 충족하기 위하여 이용된 결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 감축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109. 자발적 감축 행동이 지니는 사회·경제·환경적 가치와 적응·건강·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편익을 인지한다.

110.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신의 과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결정문 1/CP.19, 제5항(가)와 결정문 1/CP.20, 제19항에 정의된 감축에 관한 기존의 기술적 조사과정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당사국, 협약 기관, 국제기구는 적절하다면 관련이 있는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본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한 경험과 제안을 공유하며, 국내의 지속가능한 발전 우선순위에 따라 그 과정 동안에 인정된 정책, 관행, 행동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

나. 당사국과 협의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 및 비 당사국 전문가에 의한 과정에의 접근 및 참여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다. 기술집행위원회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는 다음의 의무를 따를 것을 요청한다.

(1) 기술전문가회의에 참여하고, 이 과정 동안에 인정된 정책, 관행, 행동의 이행을 확대함에 있어서 당사국을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2) 기술전문가회의 동안에 이 과정에서 이미 인정된 정책, 관행, 행동의 이행을 촉진함에 있어서 진전된 상황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제공할 것

(3)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연례 공동 보고서에 이 과정을 통한 활동 정보를 포함할 것

라. 당사국은 이 과정에서 확인된 잠재력 높은 감축 분야에서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 제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장려한다.

111. 협약의 재정 매커니즘 운영기관은 기술전문가회의에 참여하고, 참여자에게 기술적 조사과정에서 인정된 정책, 관행, 행동 이행에 진전을 촉진하는 전문가들의 기여를 알리도록 장려한다.

112. 사무국은 상기 110항에서 명시된 과정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전달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술집행위원회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협의하여, 최선의 사례를 대표하는 확장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잠재성이 있는 특정한 정책, 관행, 행동에 집중하면서 정기적인 기술전문가회의를 준비할 것

나. 상기 112항(가)에 명시된 회의 이후, 그리고 112항(다)에 명시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에 내용을 제공하는 때에 매년 강화된 감축 노력을 위한 정책, 관행, 행동의 공동편익과 감축편익 및 그 이행을 지원하는 선택사항에 대한 기술적 문서,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갱신할 것

다. 아래 122항에 명시된 대표들과 협의하여, 최선의 사례를 대표하는 확장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잠재성이 있는 특정한 정책, 관행, 행동에 관한 정보, 관련된 공동계획과 이행을 지원하는 선택사항에 관한 정보를 담아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을 준비하고, 아래 121항에 명시된 고위급 회의에 전달될 내용으로서 당사국총회의 각 회기가 시작되기 최소 2달 전에 요약문을 출판할 것

113. 상기 110항에 명시된 과정은 이행보조기관과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이 공동으로 준비할 것이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한다.

114. 또한 2017년에 상기 110항에 명시된 과정 평가를 이행하여 그 효과를 개선할 것을 결정한다.

115. 당사국의 2020년 이전 노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국인 당사국에 의한 긴급하고 적절한 재정, 기술,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인 당사국은 현 수준의 적용 재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하면서 감축과 적응을 위하여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USD)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 적절한 기술과 역량강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함께 재정 지원의 수준을 높일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116. 당사국총회 제22차 회기에서 결정한 1/CP.19 제3항과 4항의 이행 과정을 평가하는 촉진적 담화를 행하고, 모든 당사국이 규정과 지원동원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관련된 기회의 확인을 포함하여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술개발 및 이전과 역량강화 지원을 포함하면서 재원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관련된 기회를 확인할 것을 결정한다.

117. 리마-파리 행동의제의 결과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2014년 9월 23일에 소집된 기후 총회를 기반으로 함을 인정한다.

118.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는 기후행동의 확대 노력을 환영하며, 기후행동 플랫폼을 위한 비국가행위자 구역(Non-State Actor Zone)에 그러한 행동의 등록을 장려한다.⁴⁾

119. 당사국은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와 함께 감축과 완화 행동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촉진할 것을 장려한다.

120. 또한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는 상기 110항과 아래 125항에 명시된 과정에 참여를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121. 리마-파리 행동의제를 기반으로 한 결정한 1/CP.20, 제21항에 따라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당사국총회 매 회기에 공동으로 고위급 모임을 소집할 것에 동의하며 다음을 추구한다.

가. 상기 112항(다)에 명시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을 이용하여, 상기 110항과 아래 125항에 명시된 과정에서 나온 정책 선택사항과 행동의 이행에 고위급 참여를 강화하고,

4) <<http://climateaction.unfccc.int/>>.

- 나. 상기 110항과 아래 125항에 명시되고, 상기 112(다)에 명시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에 드러난 과정에서 나온 정책, 관행, 행동의 이행을 포함하여, 새롭고 강화된 자발적인 노력, 이니셔티브, 연합체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 다. 관련된 과정을 조사하고 새롭고 강화된 자발적 노력, 이니셔티브, 연합체를 인정하며,
- 라. 당사국, 국제기구,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의 현직 관리자 및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이고 보다 높은 참여를 위한 유의미하고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122. 2인의 고위급 대표는 당사국총회 의장을 대신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고위급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새롭고 강화된 자발적인 노력, 이니셔티브, 연합체의 확장과 도입을 촉진할 것을 결정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사무총장과 현재 및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과 함께 상기 121항에 명시된 연례 고위급 모임을 조정
- 나. 리마-파리 행동의제에 대한 자발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이해가 있는 당사국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의 참여
- 다. 상기 112항(가)와 아래 130항(가)에 명시된 기술전문가회의 조직에 대한 지침을 사무국에 제공

123. 또한 상기 122항에 명시된 고위급 대표는 그 임기를 지속하기 위해 중복되는 1년의 임기와 함께 일반적으로 2년간 봉사할 것을 결정한다.

- 가. 제21차 회기의 당사국총회 의장은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해야 하며, 이 대표는 임명한 날로부터 당사국총회 제22차 회기 마지막 날까지 1년 간 봉사해야 한다.
- 나. 제22차 회기의 당사국총회 의장은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해야 하며, 이 대표는 임명한 날로부터 당사국총회 제23차 회기(2017년 11월) 마지막 날까지 2년 간 봉사해야 한다.
- 다. 그 이후에 당사국총회의 다음 의장은 임기가 끝난 이전 대표의 뒤를 이어 2년을 봉사할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

124.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국과 관련 기구는 상기 122항에 명시된 대표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25.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적응에 대한 기술조사 과정을 착수할 것을 결정한다.

126. 또한 상기 125항에 명시된 적응에 대한 기술검토과정은 탄력성을 강화하고, 취약성을 줄이며 적응 행동의 이해와 이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확인하고자 노력할 것을 결정한다.

127. 더 나아가 상기 125항에 명시된 기술검토과정은 이행보조기관과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적응위원회가 수행할 것을 결정한다.

128. 상기 125항에 명시된 과정은 다음을 추구할 것을 결정한다.

- 가. 모범적인 관행, 경험, 학습된 결과의 공유 촉진
- 나. 경제적 다변성을 강화하고, 감축의 공동편익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하여 적응 행동의 이행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진할 수 있는 행동 확인
- 다. 적응에 대한 협력적 행동 증진
- 라. 특정한 정책, 관행, 행동의 맥락에서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적응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강화할 기회 확인

129. 상기 125항에 명시된 적응에 관한 기술검토과정은 과정, 방식, 내용생산, 결과 및 상기 110항에 명시된 감축에 관한 기술조사과정에서 학습된 교훈들을 고려할 것을 결정한다.

130. 사무국은 상기 125항에 명시된 기술검토과정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을 이행한다.

- 가. 특정한 정책, 전략, 행동에 집중한 정기적인 기술전문가회의를 준비할 것
- 나. 상기 130항(가)에 명시된 회의를 기초로 상기 112항(다)에 명시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에 내용을 제공하는 때에 적응행동을 강화하는 기회 및 그것의 이행,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지원하는 옵션에 관한 기술보고서를 매년 준비할 것

131. 상기 125항에 명시된 과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적응위원회는 협약 하의 적응 관련한 작업 프로그램, 기구, 제도에 대한 기존의 준비 작업을 고려하고, 협력 작용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들을 활용하고 모색하여 일관성 있고 극대화된 가치를 보장할 것을 결정한다.

132. 상기 120항에 명시된 평가와 함께 상기 125항에 명시된 과정에 대한 평가 또한 수행하여 그 효과를 개선하도록 할 것을 결정한다.

133. 당사국과 참관 기구는 2016년 2월 3일까지 상기 126항에 명시된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V.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134. 시민사회·민간부문·재정기구·도시·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환영한다.

135. 상기 134항에 명시된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는 온실가스를 감축 및/또는 탄력성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노력과 지원을 확장하며 상기 118항에 명시된 기후행동플랫폼⁵⁾의 비국가행위자 구역을 통해 노력을 증명할 것을 요청한다.

5) <<http://climateaction.unfccc.int/>>.

13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식, 기술, 관행, 지역사회와 토착 주민들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감축과 적응에 대한 경험을 교류하고 가장 최선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137. 또한 국내 정책과 탄소 가격과 같은 수단을 포함하여 감축 활동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VI. 행정 및 예산 사항

138. 본 결정에서 명시된 바, 사무국은 이행되어야 하는 활동에서 예측되는 예산결과를 주목하고, 본 결정에서 요청된 행동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요청한다.

139. 본 결정에서 명시된 행동을 포함하여, 관련된 행동의 이행 및 상기 9항에 명시된 작업 프로그램 이행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추가 자원 마련의 긴급성을 강조한다.

140. 당사국은 본 결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여할 것을 권고한다.

부속서

파리 협정

이 협정의 당사국은,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으로서,

당사국총회 제17차 회기의 결정문 1/CP.17에서 설치된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에 따라,

상이한 국가별 환경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과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적인 역량이 포함된 원칙으로 이끌어진 협약의 목적을 추구하고,

이용가능한 최적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심각한 위기에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협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특히 기후변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의 특정 요구와 특별한 상황 또한 인지하며,

재정 및 기술 이전과 관련된 개도국의 특정 요구와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당사국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의 근절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더불어 기후변화 행동, 대응, 영향이 내포한 본질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식량 안보의 보호, 기근의 근절이라는 근본적인 우선순위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식량생산 체계의 취약성을 인지하며,

국가의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견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인력의 진입 의무를 고려하며,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문제임을 인지하면서, 당사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조치를 취할 때 성평등, 여성의 권한부여, 세대 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인권, 건강권, 토착민족, 지역 사회, 이민자, 아동, 장애인,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권리, 개발에 대한 권리에 대한 각 국의 의무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고려해야 한다.

바다를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의 중요성, 그리고 어머니 지구와 같은 문화에서 인지된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주목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때 “기후 정의”의 개념이 가진 중요성을 주목하며,

본 합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모든 단계에서의 교육, 훈련, 대중의 인식, 대중의 참여, 대중의 정보 접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기후변화 해결에 있어서 각 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정부와 다양한 행위자 모두가 참여하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며,

또한 선진국인 당사국이 이끄는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소비와 생산의 지속가능한 패턴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본 협정의 목적상, 협약 제1조에 정의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로,

1. “협약”이라 함은 1992년 5월 9일 뉴욕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을 말한다.
2. “당사국총회”라 함은 협약의 규정에 의한 당사국총회를 말한다.
3.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정의 당사국을 의미한다.

제2조

1. 협약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행을 증진함에 있어서 본 협정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 위협적인 기후변화에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요소를 상당 수준으로 줄여야 함을 인지하면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
 - 나. 식량 생산에 위협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 탄력성을 기르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능력을 증대한다.
 - 다.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기후에 탄력적인 발전을 위한 경로와 일관되게 재정의 흐름을 형성한다.
2. 본 합의는 상이한 국가별 환경을 고려하여 공평성과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개별적 역량의 원칙을 반영하도록 구현될 것이다.

제3조

모든 당사국은 제2조에 명시된 협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4조, 7조, 9조, 10조, 11조, 13조에 규정된 바,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대응 방안인 국가별 기여방안으로서 야심찬 노력을 수행하고 통보해야 한다. 본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의 노력은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지 하면서 시간에 따라 진전할 것이다.

제4조

1. 제2조에 명시된 장기적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도국인 당사국의 경우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당사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이용가능한 최적의 과학적 지식에 따라 신속하게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21세기 후반에 공평을 기본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근절의 노력 측면에서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2. 각 당사국은 이루려고 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연속적인 국가별 기여방안을 준비하고 통보하며 유지한다. 당사국은 그 기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감축 수단을 추구한다.
3. 각 당사국의 연속적인 국가별 기여방안은 상이한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개별적 역량을 반영하면서 현재 당사국의 기여방안을 넘어 진전을 보이고 가장 야심찬 노력을 반영할 것이다.
4. 선진국인 당사국은 범경제적인 완전한 감축 목표를 이행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선두에 서야 한다. 개도국인 당사국은 상이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의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범경제적 배출 감축 혹은 억제 목표를 위하여 움직일 것을 장려한다.
5. 제9조, 10조, 11조에 따라 본 조의 이행을 위하여 개도국인 당사국에 지원이 제공되며 향상된 지원은 개도국인 당사국의 행동에 있어서 더 야심찬 노력을 고려할 것이다.
6. 최빈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국은 특정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온실가스 저(低)배출 개발에 대한 전략 계획·행동을 준비하고 알릴 수 있다.
7. 당사국의 적응행동 및/또는 경제 다각화 계획에서 발생하는 완화의 공동편익이 본 조항 하에서 감축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8. 국가별 기여방안을 알림에 있어서 모든 당사국은 결정문 1/CP.21과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와 관련된 결정들에 따라 명확성·투명성·이해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각 당사국은 결정문 1/CP.21과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와 관련된 결정들에 따라 5년마다 국가별 기여방안을 통보하고, 제14조에서 명시된 세계 상황점검의 결과를 통보받는다.
10.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기에서 국가별 기여방안에 대한 공동의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11. 당사국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지침에 따라 노력의 수준

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기존의 국가별 기여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

12.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별 기여방안은 사무국에 의해 유지되는 공공 레지스트리에 기록된다.
13.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별 기여방안을 설명한다. 국가별 기여방안에 부합하는 인위적 배출과 제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지침에 따라 환경 보전·투명성·정확성·완결성·비교가능성·일관성을 증진하고, 이중계상 방지를 확실히 한다.
14. 각 국의 국가별 기여방안의 맥락에서 인위적 배출과 제거에 대해 감축 행동을 인지하고 이행할 때, 당사국은 본 조의 제13항 규정에 따라 협약 하의 기존 방법과 지침을 적절히 참조해야 한다.
15.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대응수단의 영향을 받는 당사국, 특히 개도국인 당사국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16. 지역 경제통합 기구와 그 회원 국가를 포함하여 본 조 2항 하에서 공동행동에 합의한 당사국은 국가별 기여방안을 통보할 때, 관련된 기간 내에 각 당사국에 할당된 배출 수준을 포함하여 합의 조건을 사무국에 알린다. 사무국은 합의 조건에 대한 협약 조인국과 당사국에 차례대로 알린다.
17. 합의에 이른 각 당사국은 본 조의 13항, 14항과 제13조, 15조에 따라서, 상기 16항에 명시된 합의대로 배출 수준에 대해 책임을 진다.
18. 만약 공동으로 행동하는 당사국들이 그 자체로 합의의 당사자인 지역 경제통합기구의 틀 안에서 그리고 그 기구와 함께 그렇게 한다면, 지역경제통합기구와 별도로 혹은 그 지역경제통합기구와 공동으로 이행하는 회원국은 본 조항의 13항, 14항과 제13조, 15조에 부합되게 16항 하에서 통보된 합의대로 배출 수준에 대해 책임을 진다.
19. 모든 당사국은 상이한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개별적 역량을 고려하면서 제2조를 유념하여 장기적인 온실가스 저(低)배출 개발 전략을 세우고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협약 제4조 1항(라)에 명시된 대로 산림을 포함한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소를 보호·강화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보상을 통해 협약 하에서 이미 동의가 된 관련 지침과 결정에 명시된 대로 기존 체제를 이행하고 지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권장하며, 그러한 체제는 산림전용역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활동의 정책적 접근 및 긍정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보전의 역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개도국의 산림 탄소저장의 강화를 담고 있으며 그런 접근방식과 관련된 탄소없는 편익을 장려하는 중요성을 재강조하면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하여 공동의 감축 및 적응 접근방식과 같은 대안적 정책 접근을 담는다.

제6조

1. 당사국은 일부 당사국이 자국의 감축과 적응 행동에 있어서 더 야심찬 노력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별 기여방안 이행에 자발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을 인지한다.

2. 당사국이 국가별 기여방안에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감축 성과를 이용한 협력적 접근법에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한다면, 거버넌스 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고 환경 보전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지침에 따라 견고한 회계방식을 준용하여 이중계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3. 본 협정 하에서 국가별 기여방안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감축 성과의 이용은 참여하는 당사국에 의해 자발적으로 승인받는다.
4.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지하는 매커니즘은 당사국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용하도록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권한과 지침 하에 세워진다.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가 지정한 기관에 의해 감독되며 다음을 목표로 한다:
 - 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성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증진할 것
 - 나. 당사국의 권한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할 것
 - 다. 유치국의 배출 수준의 감축에 기여하며, 국가별 기여방안을 성취하기 위해 타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는 감축 활동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것이고,
 - 라. 세계 배출량에 전반적 감축을 이끌 것
5. 상기 4항에 명시된 매커니즘을 통한 감축방안이 또 다른 당사국의 국가별 기여방안의 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면 그 유치국의 국가별 기여방안의 달성을 증명함에 있어서 그 방안을 이용할 수 없다.
6.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상기 4항에 명시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활동 수익의 몫은 적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을 지원하고 행정비용을 마련하는데 사용됨을 보장한다.
7.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제4항에 명시된 체제에 대한 규칙, 방식, 절차를 채택한다.
8. 당사국은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감축·적응·재정·기술이전·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 근절의 맥락에서 자국의 국가별 기여방안을 이행하는데 이용 가능하고 통합적이고 전체적이며 균형적인 비(非)시장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이 접근 방식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 가. 감축과 적응 노력을 증진
 - 나. 국가별 기여방안 이행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화
 - 다. 제도 및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조정의 기회를 활성화
9.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非)시장 접근의 틀은 본 조 제8항에 명시된 비(非)시장 접근을 증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제7조

1. 당사국은 제2조에 명시된 온도 목표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적절한 적응 대응을 확실히 하는 목적으로 적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탄력성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이는 국제적인 적응 목표를 세운다.

2. 당사국은 적응이 현지·지방도시·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가 직면한 전지구적 도전과제이자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와 생계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대응의 주요 요소이자 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긴급하고 즉각적인 요구 사항을 고려한다.
3.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적응 노력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방식에 따라 인정된다.
4. 당사국은 적응에 대한 현재의 요구가 중요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이 추가적인 적응 노력의 요구를 줄일 수 있으며, 더 높은 적응 요구가 더 많은 적응 비용을 수반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5. 당사국은 적응행동이 취약한 집단·지역사회·생태계를 고려하여 국가 주도적이고 성 인지적이며 참여적인 투명한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하고, 관련된 사회경제적·환경적 정책과 행동에 적응을 적절히 통합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최적의 과학적 지식과 적절한 경우 전통적 지식, 토착민이 보유한 지식, 지역적 지식 체계를 토대로 해야 함을 인지한다.
6. 당사국은 적응 노력에 대한 지원 및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의 요구를 고려하는 그 중요성을 인지한다.
7. 당사국은 칸쿤적응체제를 염두에 두면서 적응에 대한 행동 향상에 있어서 당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다음을 고려한다.
 - 가. 적응 행동과 관련한 과학·기획·정책 및 이행을 포함하여 정보, 모범적 관행, 경험, 체득된 교훈을 공유할 것
 - 나. 이 협정을 수행하는 협약 하의 제도들을 포함하여 관련된 정보 및 지식의 통합과 당사국에의 기술 지원 및 지침의 규정을 지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
 - 다. 기후 서비스를 알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구조사, 기후 시스템의 체계적 관측 및 조기 경고 체계를 포함하여 기후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할 것
 - 라. 모범적인 관행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적응관행, 적응요구, 우선순위, 적응행동과 노력에 제공된 지원, 그리고 문제점과 격차를 확인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을 도울 것
 - 마. 적응 행동의 효과와 내구력을 향상시킬 것
8. 국제연합 전문기구와 기관은 본 조 제5항 규정을 고려하여 제7항에 명시된 행동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권장한다.
9. 각 당사국은 적응 관련한 계획, 정책 및/또는 기여 방법에 대한 개발 혹은 향상을 포함하여 적응 계획 단계와 행동 이행에 적절히 참여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적응 행동, 수행 목표 및/또는 노력의 이행
 - 나. 국가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
 - 다. 취약한 대상·지역·생태계를 고려하여 국가의 우선적인 행동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
 - 라. 적응 계획, 정책, 프로그램, 행동의 모니터링, 평가 및 학습, 그리고
 - 마. 경제 다각화 및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포함한 사회경제적·생태학적 체계의 탄력성 수립

10. 각 당사국은 적응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갱신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우선사항, 이행과 지원요구, 계획과 행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1. 상기 제10항에 명시된 적응보고서는 제4조 2항에 명시된 국가 적응계획, 국가별 기여방안 및/또는 국가보고서를 포함하여 기타 보고서나 문서의 한 요소로 혹은 함께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갱신한다.
12. 상기 제10항에 명시된 적응보고서는 사무국에 의해 유지되는 공공 레지스트리에 기록된다.
13. 제9조, 10조, 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의 제7항, 9항, 10항, 11항의 이행에 대해 지속적이고 향상된 국제적인 지원이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14. 제14조에서 명시된 세계 상황점검은
 - 가.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적응 노력을 인지하고,
 - 나. 본 조 제10항에 명시된 적응보고서를 고려하면서 적응행동 이행을 향상시키고,
 - 다. 적응 활동과 적응을 위해 제공된 지원의 타당성 및 효과를 검토하고,
 - 라.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적응에 대한 국제 목표 달성의 전반적인 과정을 검토한다.

제8조

1. 당사국은 극심한 날씨와 서서히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 문제를 피하고 최소화하는데 그 중요성과 손실과 피해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할을 인지한다.
2. 기후변화영향과 관련하여 손실과 피해에 대한 바르샤바 국제 매커니즘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준용되며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향상되고 강화될 수 있다.
3. 당사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피해와 손실에 대해 협력적이고 촉진적인 기반 위에 바르샤바 국제 매커니즘을 통하여 이해·행동·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 따라서 이해·행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과 촉진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조기 경고 체계;
 - 나. 비상 대비;
 - 다. 서서히 일어나는 자연재해
 - 라.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피해와 손실을 수반하는 사건
 - 마. 종합적인 위기 평가 및 관리
 - 바. 위기 보험 기금, 기후위기의 통합 및 기타 보험 해결책;
 - 사. 비(非)경제적 손실
 - 아. 지역사회, 생계, 생태계의 탄력성
5. 바르샤바 국제 매커니즘은 관련 기구 및 협정 외의 전문가 조직뿐만 아니라 협정 하의 기존 조직 및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제9조

1. 선진국인 당사국은 협약의 기존 의무의 연장선상에서 감축과 적응 측면에 대해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
2. 타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3. 국제적 노력의 일부로서 선진국인 당사국은 국가 주도의 전략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행동을 통한 공공 기금의 중요한 역할을 주목하고,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고려하며 다양한 자원, 제도 및 통로를 통한 기후재정 동원에 지속적으로 선두에 서야 한다. 이러한 기후 재정 동원은 이전보다 상향된 노력을 나타내야 한다.
4. 확장된 재원에 관한 규정은 국가 주도의 전략을 고려하면서 감축과 완화 간의 균형과 최빈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국과 같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하고 역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우선순위와 요구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공공 기금 및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적응 재원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5. 선진국인 당사국은 본 조 제1항 및 3항과 관련된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2년마다 알리며, 적용가능하다면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지원될 예측되는 공공 재원의 수준을 포함한다. 재원을 제공하는 타 당사국은 자유의사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2년마다 알릴 것을 권장한다.
6. 제14조에 명시된 세계 상황점검에는 기후 재원과 관련한 노력에 대해 선진국 및/또는 협정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고려한다.
7. 제13조에 규정된 바, 제1차 회기에서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방식, 절차 및 지침에 따라 2년마다 공공개입을 통해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을 위해 제공되고 동원된 지원에 대해서 투명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한다. 타 당사국도 그렇게 할 것을 권장한다.
8. 운영기관을 포함하여 협약의 재정 매커니즘은 협정의 재정 매커니즘으로서 수행한다.
9. 협약의 재정 매커니즘의 운영기관을 포함하여 협정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국가 기후전략과 계획의 맥락에서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통해 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과 개발도상국인 당사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국을 위한 강화된 사전준비 지원을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제10조

1.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이전을 전적으로 구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장기 비전을 공유한다.
2. 합의문 하의 감축과 완화 행동 이행을 위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기술의 배치 및 보급 노력을 인지하면서 기술 개발과 이전에 대한 협력적 행동을 강화한다.
3. 협약 하에 설치된 기술 매커니즘은 본 협정을 수행한다.
4. 기술 매커니즘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장기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본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과 이전에 대한 행동 강화를 증진하고 촉진하여 기술 매커니즘 작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세워진다.

5. 혁신을 가속화하고 장려하며 구현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장기적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하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킨다. 그러한 노력은 연구조사와 개발에 대한 협력적 접근을 위해 협약의 기술매커니즘 및 재정매커니즘의 재정 수단을 통해 지원되며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이 특히 기술 주기의 초기 단계에서 기술에 접근하는데 용이하게 한다.
6.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원은 감축과 완화에 대한 지원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기술 주기 단계에서 기술 개발과 이전에 대한 협력적 행동의 강화를 포함하여 본 조의 이행을 위해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제공된다. 제14조에 명시된 세계 상황점검은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지원 관련된 노력에 대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한다.

제11조

1. 협정 하의 역량강화는 최빈개발도상국과 같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군서도서국과 같은 개도국인 당사국이 적응과 감축 행동의 이행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역량과 능력을 높이고, 기술 개발과 보급, 기후재정 접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대중 인식, 투명하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정보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2. 역량강화는 국가적 요구에 기초하여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이 국가지방정부·지역사회 차원에서 당사국의 주인인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역량강화는 협약의 역량 강화 활동을 포함하여 학습된 교훈을 지침으로 하고, 참여적이고 교차적이며 성 인지적인 과정으로 효과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3. 모든 당사국은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선진국인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향상시켜야 한다.
4. 지역적, 양자 및 다자간 접근을 통해서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모든 당사국은 역량강화에 대한 이러한 활동과 수단을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본 협정을 이행할 역량강화 계획·정책·행동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5. 역량강화 활동은 본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협약 하에 세워진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강화된다.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기에서 역량강화에 대한 초기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고 채택한다.

제12조

당사국은 본 협정의 행동 강화에 관한 조치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기후변화 교육·훈련·대중인식·대중의 참여 및 정보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안을 강구하는데 협력한다.

제13조

1. 상호 신뢰와 확신을 이루고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상이한 역량을 염두에 두면서 공동의 경험이 기반이 된 구조적 유연성으로 행동과 지원에 대한 강화된 투명성 체계를 세운다.

2. 투명성 체제는 본 조의 규정 이행에 있어서 개별적 역량에 따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본 조 제13항에 명시된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은 그러한 유연성을 반영한다.
3. 투명성 체제는 협약 하의 투명성 작업준비를 기반으로 하고 강화하며 최빈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국의 특수 상황을 인지한다. 또한 촉진적이고 비강제적이며 가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행되고 국가 주권을 인정하며 당사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4. 협약 하의 투명성 작업준비는 국가 간 논의, 2년 단위의 보고서 및 갱신 보고서, 국제 평가 및 검토, 국제 협의 및 분석을 포함하여 본 조 제13항에 명시된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 개발에 이용되는 경험의 일부를 형성한다.
5. 행동에 대한 투명성 체제의 목적은 제4조의 국가별 기여방안 달성에 대한 명확성 및 과정의 확인을 포함하여 제2조에 명시된 협약의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 행동과 제14조의 세계 상황점검에 통보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관행, 우선사항, 요구와 격차를 포함하여 제7조의 당사국의 적응행동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있다.
6.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의 목적은 제4조, 7조, 9조, 10조, 11조의 기후변화 행동 맥락과 관련하여 개별 당사국이 제공한 지원을 명확하게 알리고, 제14조의 세계 상황점검에 통보하기 위하여 총 재정지원의 전체 개요를 제공하는 데 있다.
7. 개별 당사국은 다음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가 동의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채택한 모범적 관행 방법론을 이용하여 마련된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에 관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 나. 제4조의 국가별 기여방안 이행 및 달성 과정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8. 각 당사국은 적절하게 제7조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에 관련된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한다.
9. 선진국인 당사국은 제9조, 10조, 11조에 따라 재정·기술·이전·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정보를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제공하며, 지원을 제공하는 타 당사국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
10.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제9조, 10조, 11조 하에서 요구하고 받게 되는 재정·기술·이전·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1. 본 조 제7항, 9항에서 각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는 결정문 1/CP.21에 따라 기술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역량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경우 검토 과정에서 역량강화 요구를 확인하는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제9조의 노력과 각 당사국의 국가별 기여방안의 이행 및 달성에 관해서 촉진적인 다자간 심의 과정에 참여한다.
12. 본 항의 기술전문가 검토는 제공받은 당사국의 지원에 대한 심의와 국가별 기여방안의 이행과 달성을 포함한다. 또한 검토는 당사국의 개선 분야를 확인하고, 본 조 제2항의 당사국에 따른 유연성을 고려하면서 본 조 제13항에 명시된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과 함께 정보의 일관성 검토를 포함한다. 검토는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역량과 상황에 특히 주목할 것이다.
13.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협약의 투명성 관련한 작업준비의 경험을 기반으로 본 조의 규정을 상세히 하면서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공통 방식, 절차,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

14. 본 조의 이행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지원이 제공된다.
15. 또한 개도국의 투명성 관련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이 제공된다.

제14조

1.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정기적으로 본 협정의 이행을 점검하여 협정의 목적과 (“세계 상황점검”으로 불리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과정을 평가할 것이다. 감축·완화 이행과 지원 수단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촉진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고 이용 가능한 최적의 과학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한다.
2.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2023년에 제1차 세계 상황점검을 이행하며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결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5년 마다 이행한다.
3. 세계 상황점검의 결과는 국가가 결정한 방식으로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함은 물론 본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동과 지원을 갱신하고 증진함에 있어서 당사국에 고지한다.

제15조

1. 본 협정의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준수를 증진하는 체제가 이로써 마련된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체제는 투명하고 대립적이지 않으며 가혹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촉진적 성격과 기능을 하는 전문가 기반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국가 역량과 상황에 특히 주목한다.
3. 위원회는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에서 채택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작동할 것이며,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 매년 보고한다.

제16조

1. 협약의 최고 기관인 당사국총회는 본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본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의 당사국은 본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모든 회기의 심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당사국총회가 본 협약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본 협약에 따른 결정은 협약의 당사국만이 할 수 있다.
3. 당사국총회가 본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그 당시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의 당사국을 대표하는 자가 당사국총회의 의장단의 구성원인 때에는 동 구성원은 본 협약의 당사국 가운데 선출된 추가구성원으로 대체된다.
4. 본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협정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본 협약의 효과적 이행의 증진에 필요한 결정을 한다. 당사국총회는 본 협정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을 행한다.
 - 가.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보조기관을 설립할 것
 - 나.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해 요구될 수 있는 다른 기능을 행사할 것

5.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가 컨센서스로 달리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총회의 의사규칙 및 협약 상 적용되는 재정 절차는 본 협약에 준용한다.
6.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기는 사무국에 의하여 본 협약의 발효일 이후 예정된 당사국총회 첫 회기와 함께 소집된다. 본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후속 정기회의는 동 당사국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총회의 정기회의와 함께 개최된다.
7.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특별회기는 동 당사국총회가 필요하다고 간주 되는 다른 시기 혹은 당사국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된다. 다만, 이러한 서면요청은 사무국이 이를 당사국에 통보한 후 6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8. 국제연합·국제연합전문기구·국제원자력기구 및 이들 기구의 회원국이나 참관인인 협약의 비당사국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 회기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국내적·국제적 또는 정부간·비정부간 기구나 기관을 불문하고 본 협정이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는 기구나 기관이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 회기에 참관인으로 참석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하는 경우, 출석당사자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그 참석이 허용될 수 있다. 참관인의 참석 허용은 제5항에 규정된 의사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7조

1.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본 협정의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사무국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8조 제2항 및 사무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준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8조 제3항은 본 협정에 준용한다. 또한 사무국은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에 의해 협정에 따라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

1. 협약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 및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은 각각 본 협정의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 및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 및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의 기능수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은 본 협정에 준용한다. 본 협정의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 및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 회의의 회기는 각각 협약의 과학·기술 보조기관 및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의 회의와 함께 개최된다.
2. 본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의 당사국은 보조기관의 모든 회기의 심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조기관이 이 협정의 보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본 협정에 따른 결정은 협약의 당사국만이 할 수 있다.
3. 협약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보조기관이 본 협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당시 본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의 당사국을 대표하는 자가 보조기관의 의장단의 구성원인 때에는 동 구성원은 이 협정의 당사국 중에서 선출된 추가구성원으로 대체된다.

제19조

1. 협약에 따라 설치된 보조기관 또는 다른 제도적 장치는 협정에 명시된 경우 외에도 파리 협정의 당사자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결과에 따라 협정을 수행한다. 동 당사국총회는 그런 보조기관 또는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파리 협정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는 그런 보조기관과 제도적 장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1. 본 협정은 협약의 당사국인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이들에 의해 비준·수락·승인된다. 2016년 4월 22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그 후로 본 협정은 서명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본 협정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기구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도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본 협정의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기구의 하나 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정의 당사국인 경우, 기구와 그 회원국은 이 협정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책임을 결정한다. 이 경우, 기구와 그 회원국은 이 협정상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3.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에서 본 협정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또한, 기구는 그 권한범위의 실질적 변동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이를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제21조

1. 본 협정은 전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55개 이상의 협약 당사국이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본 조 제1항의 제한된 목적으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협약 당사국에 의한 협정 채택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최신의 배출량을 말한다.
3. 발효에 관한 본 조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후 본 협정을 비준·수락·승인·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에는, 그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동 국가 또는 기구에 대하여 발효한다.
4. 본 조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22조

협약의 수정 채택에 관한 협약 제15조의 규정은 필요한 부분은 수정되어 본 협정에 준용한다.

제23조

1. 협약 부속서의 채택 및 수정에 관한 협약 제16조 규정은 필요한 부분은 수정되어 본 협정에 준용한다.
2. 본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에 관한 언급은 동시에 그 부속서도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부속서는 목록·양식이나 과학적·기술적·절차적·행정적 특성을 갖는 서술적 성격의 자료에 국한된다.

제24조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제14조의 규정은 본 협정에 준용한다.

제25조

1. 각 당사국은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권한사항에 대하여 본 협정의 당사국인 기구의 회원국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기구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2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정의 수탁자가 된다.

제27조

본 협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제28조

1. 당사국은 본 협정이 자신에 대해 발효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탈퇴통고서에 이보다 더 늦은 날 짜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늦은 날에 발효한다.
3. 협약으로부터 탈퇴한 당사국은 본 협정으로부터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015년 12월 12일에 파리에서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명시된 일자에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